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문서번호** |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39 | | |
| **납세자회신번호** | | **세목** | 양도소득세 |
| **생산일자** | 2018. 11. 01. | **귀속연도** | |
| **제목** |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| | |
| **요지** |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| | |
| **답변내용** | 「소득세법」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(이에 딸린 토지 포함)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| | |
| **관련법령** | 소득세법 제114조의2, 소득세법 제89조 | | |
| **상세내용** | | | |